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2015. 12.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8일 (수)

나. 제출자 : 신종갑의원 외 10인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3일 (월)

4. 관련근거

가. 「도시철도법」 제5조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다. 「지방자치법」 116조

5. 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현재 서울의 서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를 연결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지원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으로 구의원 2명, 철도, 토목, 건축, 전기, 교통, 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포구민과 사회·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라.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까지 존속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7.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현재 서울의 서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를 연결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서부 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부지역 광역 철도 건설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과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으로 구의원,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포구민과 사회·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분과위원회 설치,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 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 까지 존속하도록 정하였음.
-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한 것으로,
- 장래의 수도권 한강횡단 철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서부지역 교통수요 분담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구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마포구 관내 지하철역 정거장 추가 설치 추진을 위해서라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실정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현재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하여, 정부(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본 사업이 확정 된 이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경위

- '13. 10. 29 : “까치산(화곡)~홍대입구선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업무협약(마포구, 강서구)
- '13. 12. 03 : 공동용역 계약 및 착수
- '14. 01. 22 ~ 23 : 공동용역 착수보고(마포구, 강서구)
- '14. 03. 24 : 공동용역 중간보고(마포구)
- '14. 04. 04 : 공동용역 참여요청(부천시)
- '14. 06. 10 : 공동용역 협약체결(마포구, 강서구, 부천시)

※ 명칭변경 : 원종역~화곡~홍대입구역 광역철도 타당성검토 용역
- '14. 11. 26 : 공동용역 최종보고 및 설명회(국회의원회관)
- '14. 12 : 공동용역 준공
- '14. 12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요청(국토교통부)
- '15. 10. 15 :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강서구)
- '15. 11. 11 :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건설 추진 공동협력을 위한
 MOU체결(서울특별시&경기도)
- '15. 11. 25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마포구)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